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A17BL)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 공급대상 :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총 9개동 공동주택 총 600세대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

※ 총 600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59㎡), 공공분양주택 360세대(8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광고 A17BL 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며, 동일 블록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 031-261-177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지분적립형 (국민주택)	경기도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대당침체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0년	5년	적용	공공택지(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10.30.(금)	'26.11.09.(월)	'26.11.10.(화)	'26.11.11.(수)	'26.11.18.(수)	'26.11.20.(금)~ '26.11.25.(수) [6일간]	'27.01.25.(월)~ '27.01.27.(수) [3일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신청 주의사항

■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은 **전용면적 85㎡ 이하 ①지분적립형 분양주택(59㎡)과 ②공공분양주택(84㎡)이 혼합된 국민주택**입니다.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A17BL) 분양유형별 청약가능 주택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본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공공분양주택(별도 입주자모집공고 적용)
전용면적 59㎡	전용면적 84㎡

■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A17BL)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31-261-1770)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대출 비율 축소(금융권의 대출규제 등) 및 대출 불가 시 공공주택사업자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시 지정한 지분취득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지분취득을 위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은행의 알선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의사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전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안내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운영관리 기준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분양자가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 공유기간 동안 지분을 공유, 정해진 회차에 공공지분을 순차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수분양자가 본인 소유지분만을 임의로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최초 계약 시 공급계약 및 임대차 계약(공공지분 사용)을 체결합니다. 공급계약(지분취득에 따른 지분 비율 조정) 및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 및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은 **5년마다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은 **각 회차의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분양자는 주택의 공유자로서 자기 지분에 기하여 거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의 사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에 따른 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이는 일반 임대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20년. 이하 "소유권 공유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② "수분양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을 체결한 자와 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 ③ "공공지분"이란 소유권 공유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합니다.
- ④ "주택공급가격"이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주택 전체(지분 전체)의 분양가격(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을 말합니다.
- ⑤ "취득기준가격"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가격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⑥ "가산이자"란 제5호의 이자를 말합니다.
- ⑦ "지분취득대금"이란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으로서 취득기준가격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⑧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소유권 공유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를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⑨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란 법 제49조 제7항의 임대료로서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증금 및 월 단위 사용대가를 말합니다.

- ⑩ “공급계약”이란 지분의 회차별 매매와 이전등기, 전매·매입·해제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⑪ “변경계약”이란 회차별 지분취득에 따라 지분율·지분취득대금·사용조건의 변경을 확정하는 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변경계약을, “갱신계약”이란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사용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분양자”는 최초 계약체결 시 지분취득에 관한 [공급계약]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분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을 함께 체결하며, 소유권의 완전한 취득 및 주택 사용을 위해 “이원적 계약구조”에 따른 [공급계약]의 지분취득대금과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각각 동시 병행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 본 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20년으로 운영하며, 30년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회차별 지분취득계획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회차별 추가 지분취득은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의무로서, 수분양자가 취득여부·시기·비용을 선택하거나 연기·생략·조기취득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지분 25%는 입주 시 취득하며, 이후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5년마다 20%·20%·20%·15%씩 추가 취득하여 20년이 되는 날 소유권 전부를 취득합니다.
- 회차별 지분취득은 수분양자의 의무입니다. 예정된 회차의 지분취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지분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되고 위약금이 공제됩니다(위약금의 상한은 「별치 등」 항 참조).
- “수분양자”는 최초 지분(25%) 취득 후 5년마다 추가 지분을 분할 취득하여야 하며, 가산이자자는 장기간에 걸쳐 최초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제2 ~ 5회 지분 취득 시점에 계산된 ‘가산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은 입주시점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일(예정: 2030.01.01.)입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지분취득대금의 납부기한은 그 다음 은행 영업일로 합니다.
- “소유권 공유기간 가산일”(공공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의 소유권 공유기간 20년이 시작되는 날)과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 개시일”은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과 같은 날입니다.
- 제2회차 이후의 지분취득 기준일은 그 날부터 5년마다 같은 날(예정: 2035.01.01. / 2040.01.01. / 2045.01.01. / 2050.01.01.)이며, 입주시점기간이 변경되면 기준일도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 “지분취득일”은 회차별 지분 이전등기의 신청 접수일이며, 가산이자자는 각 회차별 “지분취득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본 주택의 지분취득에 따른 가산이자와 공공지분 사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소유권 공유기간 동안 동시에 부과됩니다. 수분양자가 회차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그 지분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조정되며, 감소하는 임대보증금은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수분양자가 회차별 지분취득대금 납부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 지분취득으로 감소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그 회차 지분취득대금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협약 금융기관에 양도된 세대는 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부 요건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최초 임대보증금은 본 공고에 기재된 금액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인근 유사 단지 전세계약금액 평균의 80%에 공공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산정하였습니다. 회차별 지분취득에 따라 지분율이 변경되어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변경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인근 유사 단지 전세계약금액 평균의 80%에 공공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은 제1 ~ 4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로부터 2년 6개월 시점에 갱신되며, 인근 유사 단지의 전세계약금액 변동 등을 고려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기준액(월임대료로 전환하기 전의 임대보증금)의 105%를 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100만원 단위)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80%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에 정한 최소 유보비용 산식에 따라 전환율이 높아지면 그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는 「전환금액×연 3.5%(현재 기준)÷12」로 계산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입주 시점 공공주택사업자의 전환기준 및 전환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율이 변경 시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관계법령,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등을 따릅니다.
- 지분취득 일정

구분		수분양자 지분취득률		공공주택사업자 지분 비율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
		회차별	누계		
1회차	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	25%	25%	75%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2회차	(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0%	45%	55%	지분 비율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정
3회차	(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20%	65%	35%	
4회차	(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15년이 되는 날)	20%	85%	15%	
5회차	(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15%	100%	0%	계약종료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회차별 지분취득대금(최초 지분취득 시에는 해당사항 없음)은 주택공급가격에 취득하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가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차별 지분취득대금을 완납하는 날 공공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며(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법무사가 대리), 등기에 따른 세금과 통상의 등기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제2회차 이후의 지분취득대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미리 납부(선납)할 수 있으나, 선납금은 무이자 예수금으로 보관되어 해당 기준일에 충당되며 선납으로 지분을 조기에 취득하거나 할인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또는 제1회차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대금이 기준일부터 3개월간 미납되어 공공주택사업자가 3회 이상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최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미납한 경우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최종 최고기간 중 분할납부 협의 또는 임대보증금 충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관리비의 미납은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① 수분양자가 납부한 지분취득대금(계약금·잔금·회차별 대금, 가산이자 포함) ② 계약서 및 관련법에 따른 이자 ③ 임대보증금 잔액의 합계액에서 ④ 위약금, 미납 지분취득대금 임대료·연체료, 원상회복비용, 지분 재이전 등기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분 재이전등기 및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협약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반환금은 금융기관에 우선 지급됩니다.
-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부금의 반환, 위약금 공제,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의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1.18.)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중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수분양자”는 매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3자 임대는 원칙적으로 거주무기간(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중에는 제한되며, 거주무기간 경과 후 전대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거주무, 전매 제한 안내」항과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기등기 내용)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무기간이 있는 주택으로서 그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됩니다.
- (가등기 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가등기는 공급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지분 재이전을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의 지분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 설정·말소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지분 공동영의 : 수분양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소유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수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7호) 증여받은 배우자는 변경 계약으로 계약상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배우자 외의 자에게 지분 일부를 양도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에 따른 공동명의로는 제외).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거주무기간 중 법령상 거주한 것으로 보는 사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각 호)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전매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소유 지분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납부한 입주금과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소유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입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위 두 경우(거주무기간 중 거주 이전, 전매제한기간 중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없으며,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입주자 선정일부터 10년)이 끝나기 전에는 자금 사정 등 개인적 사유로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입가격은 매입 시점까지 납부한 지분취득대금(계약금·잔금·회차별 지분취득대금)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 대금·취득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정 매입과 부정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신이 적용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0.2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천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3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527**이며, 이 공고문은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동번호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확정된 동번호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관람 안내**
- 건본주택 내 건본세대는 59B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9A, 59C, 59D 타입 및 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에게서는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람 일정	주 소	기 타
건본세대 59B 타입	'26.10.30.(금) ~ '26.11.11.(수) (10:00 ~ 17: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일원	별도의 예약없이 선착순으로 운영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61-1770

- **건본주택 주차장은 건본주택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방문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미건립 세대로 인해 실물 확인을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상기 '건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 등의 경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통한 사전 예약 후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신단 단위세대(건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타입별 평면도, 세대 VR 등 상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사업주체 : 공공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민간사업자 - 동부건설(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대보건설(주), (주)우호건설, 씨앤씨종합건설(주)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2년 미만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합니다.**(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2년 미만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화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 포함)의 소명서류 제출 불가(해외체류 등 모든 사유 불인정), 적격여부 심사 시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불가 등 모두 불인정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 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1순위자**] 신청자 본인 [2순위자] 해당없음	[1순위자**] 신청자 본인	[2순위자]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신청자 본인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24개월 24회 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24개월 24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1순위자] 신청자 본인 (24개월 24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 (가입자)
소득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40%)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200%)
총자산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이하 (부모)1,035백만원이하	(세대) 362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검증함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의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인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번호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낙찰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세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중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말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택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의해 **전매제한 10년 및 거주무 5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①
거주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⑥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상기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말함)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아래와 같이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 **출산특례를 신청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악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명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청약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일정	'26.11.09.(월)	'26.11.10.(화)	'26.11.11.(수)	'26.11.18.(수)	'26.11.20.(금)~11.25.(수) (6일간, 10:00~17:00)	'27.01.25.(월)~01.27.(수) (3일간, 10:00~17:00)
방법	인터넷 청약(09: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건분주택(방문 접수) ※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제(구비서류 지참 방문) ※ 예비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 현장접수 : 건분주택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건분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일원)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 예정	

※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1순위·2순위 기준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① 무주택세대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③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가능합니다.
2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일원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건본주택**

- ※ 고려지,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당첨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공공주택사업자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공공주택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름)**

대상증서	1.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2.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옥션) 계약서 :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며 수분양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인지세 부담액(1/2)을 수분양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옥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동부건설(주)과 계약자가 각각 1/2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계약서 1통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부담액(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5(전매제한)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5를 위반하여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주택사업자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평면명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제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4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신청자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부부 제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 전인 경우에는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 (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 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치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중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I 공급 규모 · 공급대상 ·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총 9개동, 총 600세대 중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세대(특별공급 168세대, 일반공급 72세대)**

2.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발코니 확장 여부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청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27	01	059.8958A	59A	59.8958	20.4762	80.3720	48.8890	129.2610	확장	53.6128	43	6	5	6	1	3	9	30	13	2
	02	059.9657B	59B	59.9657	20.5915	80.5572	48.9459	129.5031	확장	53.6753	143	22	14	22	4	10	28	100	43	2
	03	059.7232C	59C	59.7232	19.5125	79.2357	48.7481	127.9838	확장	53.4583	42	6	4	6	1	3	9	29	13	3
	04	059.9593D	59D	59.9593	20.5403	80.4996	48.9407	129.4403	확장	53.6696	12	2	1	2	1	1	2	9	3	1
	합 계											240	36	24	36	7	17	48	168	72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각종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수정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은 무상귀속(기부채납),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아너스 라운지)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동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동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주택타입별 구분 및 그에 따른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견본주택,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제기를 사업주체에 하실 수 없습니다.

3. 주택공급가격 및 임대보증금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계약 구조

- 본 주택의 계약은 다음 두 계약으로 구성되며, 당첨자는 최초 계약체결 시 두 계약을 함께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① 공급계약 : 최초 지분취득 및 회차별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
 - ②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지분의 사용(임대보증금·월임대료)에 관한 계약
- 공급계약과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계약해제·종료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계약서에 따릅니다.
- ※ 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합니다.

■ 주택공급가격, 임대보증금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층별	세대수	주택공급가격	1회차 지분취득 (25%)		2회차 지분취득 (20%)	3회차 지분취득 (20%)	4회차 지분취득 (20%)	5회차 지분취득 (15%)	임대차계약 (공공지분 사용)
				계약금(10%) 계약시	잔금(15%) 입주시					최초 임대보증금
059.8958A	1층	3	650,100,000	65,010,000	97,515,000	130,020,000	130,020,000	130,020,000	97,515,000	330,000,000
	2층	3	657,000,000	65,700,000	98,550,000	131,400,000	131,400,000	131,400,000	98,550,000	
	3층	4	663,800,000	66,380,000	99,570,000	132,760,000	132,760,000	132,760,000	99,570,000	
	4층	4	670,700,000	67,070,000	100,605,000	134,140,000	134,140,000	134,140,000	100,605,000	
	5-9층	20	677,500,000	67,750,000	101,625,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01,625,000	
	10층이상	9	684,400,000	68,440,000	102,660,000	136,880,000	136,880,000	136,880,000	102,660,000	
059.9657B	1층	2	651,600,000	65,160,000	97,740,000	130,320,000	130,320,000	130,320,000	97,740,000	330,000,000
	2층	3	658,500,000	65,850,000	98,775,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98,775,000	
	3층	10	665,400,000	66,540,000	99,810,000	133,080,000	133,080,000	133,080,000	99,810,000	
	4층	10	672,200,000	67,220,000	100,830,000	134,440,000	134,440,000	134,440,000	100,830,000	
	5-9층	50	679,100,000	67,910,000	101,865,000	135,820,000	135,820,000	135,820,000	101,865,000	
	10층이상	68	685,900,000	68,590,000	102,885,000	137,180,000	137,180,000	137,180,000	102,885,000	
059.7232C	1층	3	634,500,000	63,450,000	95,175,000	126,900,000	126,900,000	126,900,000	95,175,000	329,000,000
	2층	3	641,200,000	64,120,000	96,180,000	128,240,000	128,240,000	128,240,000	96,180,000	
	3층	4	647,900,000	64,790,000	97,185,000	129,580,000	129,580,000	129,580,000	97,185,000	
	4층	4	654,600,000	65,460,000	98,190,000	130,920,000	130,920,000	130,920,000	98,190,000	
	5-9층	20	661,200,000	66,120,000	99,180,000	132,240,000	132,240,000	132,240,000	99,180,000	
	10층이상	8	667,900,000	66,790,000	100,185,000	133,580,000	133,580,000	133,580,000	100,185,000	
059.9593D	1층	1	644,600,000	64,460,000	96,690,000	128,920,000	128,920,000	128,920,000	96,690,000	330,000,000
	2층	1	651,300,000	65,130,000	97,695,000	130,260,000	130,260,000	130,260,000	97,695,000	
	3층	1	658,100,000	65,810,000	98,715,000	131,620,000	131,620,000	131,620,000	98,715,000	
	4층	1	664,900,000	66,490,000	99,735,000	132,980,000	132,980,000	132,980,000	99,735,000	
	5-9층	5	671,700,000	67,170,000	100,755,000	134,340,000	134,340,000	134,340,000	100,755,000	
	10층이상	3	678,500,000	67,850,000	101,775,000	135,700,000	135,700,000	135,700,000	101,775,000	

■ [예시]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전환

[단위 : 원]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전환율	전환요율	전환 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비고
59㎡	330,000,000	80%	3.5%	66,000,000	770,000	

※ 위 예시의 전환율 80%는 전환금액의 비율, 연 3.5%는 공고일 현재 적용 전환요율입니다. 실제 전환 가능 금액과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공공지분 사용)에서 정한 산식(전환금액 × 연 전환율 ÷ 12) 최소 유보액 제외에 따라 확정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입주 시점 공공주택사업자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 시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회차별 지분취득표

구분		1회차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	2회차 (기준일+5년)	3회차 (기준일+10년)	4회차 (기준일+15년)	5회차 (기준일+20년)
지분취득 비율	회차별	25% (계약금 10%/잔금 15%)	20%	20%	20%	15%
	누계	25%	45%	65%	85%	100%
지분취득대금		주택공급가격 × 25%	주택공급가격 × 20% + 가산이자	주택공급가격 × 20% + 가산이자	주택공급가격 × 20% + 가산이자	주택공급가격 × 15% + 가산이자
임대보증금		공공지분 75%에 대한 임대료	공공지분 55%에 대한 임대료	공공지분 35%에 대한 임대료	공공지분 15%에 대한 임대료	-

※ 실제 가산이자(는) 각 지분취득일 현재 공표된 최근 월분의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한국은행 ECOS 적용 예정) 평균이자율을 산출평균하여 단리로 계산합니다(가산이자 : 최초 지분취득일과 해당 회차 지분취득일 이자율의 산출평균, 기간 : 최초 지분취득일부터 해당 회차 지분취득일 전날까지의 연 환산 일수). 공공주택사업자는 각 회차 기준일 전에 지분취득대금 예상액을 안내 예정이며, 최종 확정액에 따라 납부합니다.

※ 공공지분 사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회차별 인건 유사 단지 전체 계약금액 평균의 80%에 공공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재산정하며, 월임대료는 수분양자가 전환한 금액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 회차별 지분취득대금을 완납하는 날 공공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해당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며(공공주택사업자 지정 법무사가 대리), 등기에 따른 세금과 통상의 등기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최종 회차 지분의 이전등기 신청 접수일(등기 완료 조건)에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 잔액은 반환됩니다.

- 본 주택의 지분취득에 따른 가산이자와 공공지분 사용에 대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소유권 공유키간 동안 동시에 부과됩니다. 수분양자가 회차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그 지분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지분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조정되며, 감소하는 임대보증금은 30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수분양자가 회차별 지분취득대금 납부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 지분취득으로 감소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그 회차 지분취득대금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협약 금융기관에 양도된 세대는 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부 요건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등에서 공급가격, 동·호세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주택공급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제세공과금(인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주택공급가격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 상기 주택공급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주택공급가격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공급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제1회차 지분취득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려는 경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그 날까지 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회차별 비율(25% · 20% · 20% · 20% · 15%)로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부터 5년 · 10년 · 15년 · 20년이 되는 날에 지분을 취득합니다. 회차별 추가 지분취득은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의무로서, 수분양자가 취득 여부시기비용을 선택하거나 연가생략조기취득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일이며,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 기준일은 그 날부터 5년마다 같은 날입니다. 실제 지분취득일은 회차별 지분 이전 등기의 신청 접수일(등기 완료 조건)입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정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수분양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약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약이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약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 ※ 분양대금 납부계약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약(동호수마다 다름)을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약이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계약은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약(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17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7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약(가상계좌)는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지가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비 안내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수분양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	계약 시	입주 시
59A	3,763,000	752,600	3,010,400
59B	6,591,000	1,318,200	5,272,800
59C	4,018,000	803,600	3,214,400
59D	5,068,000	1,013,600	4,054,400

- ※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주택공급가격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층·호수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나,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약 및 납부 방법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계약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20%	계약 시	세대별 가상계약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약이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약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잔금	공급금액의 80%	입주 시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약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약(동호수마다 다름)을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약이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계약은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약(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약(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발코니 확장비(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지가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7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7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건본주택,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열외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선택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호 닫힘 상태 유지, 세탁기 급배수 호스 내 잔수 제거 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건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사항은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회차별 지분취득대금 및 전매 시 법정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으며, 전매 시 공동주택사업자가 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코니 확장비는 납부 원금이 반환되고, 추가선택품목은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반출 또는 무상귀속으로 처리됩니다.(다만 공동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부합 품목의 정산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반환 기준에 따릅니다.)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회차별 지분취득대금은 감액 후 주택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공사와 별도로 체결하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제·환불은 그 계약서에 따릅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벽지·바닥재·가구류·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공동주택사업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공간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주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②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③ 천장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탈 및 마감재	천장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④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창고 문(해당 타입), 화장대(상판엔지니어드 포함), 팬트리/드레스룸 선반, 불박이장 및 악세서리 일체	미설치
⑤ 주방	주방/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 일체(상판, 싱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쿠팡, 렌지후드), 수전류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⑥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벽/바닥 타일, 천장재, 젠다이엔지니어드,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⑦ 창호	목창호 문틀/문판/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실외기실 도어/루버	플라스틱창호 내장,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다용도실/대피공간 도어
⑧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⑨ 옵션품목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미설치
⑩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미설치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약식표기(타입)	59A	59B	59C	59D
금액	31,947,000	30,378,000	31,496,000	30,03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취득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아파트 주택공급가격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층별	세대수	마이너스옵션 공급 금액	1회차 지분취득(25%)		2회차 지분취득 (20%)	3회차 지분취득 (20%)	4회차 지분취득 (20%)	5회차 지분취득 (15%)	임대차계약 (공공지분 사용)
				계약금(10%)	잔금(15%)					최초 임대보증금
				계약시	입주시					
059.8958A	1층	3	618,153,000	61,815,300	92,722,950	123,630,600	123,630,600	123,630,600	92,722,950	330,000,000
	2층	3	625,053,000	62,505,300	93,757,950	125,010,600	125,010,600	125,010,600	93,757,950	
	3층	4	631,853,000	63,185,300	94,777,950	126,370,600	126,370,600	126,370,600	94,777,950	
	4층	4	638,753,000	63,875,300	95,812,950	127,750,600	127,750,600	127,750,600	95,812,950	
	5-9층	20	645,553,000	64,555,300	96,832,950	129,110,600	129,110,600	129,110,600	96,832,950	
	10층이상	9	652,453,000	65,245,300	97,867,950	130,490,600	130,490,600	130,490,600	97,867,950	
059.9657B	1층	2	621,222,000	62,122,200	93,183,300	124,244,400	124,244,400	124,244,400	93,183,300	330,000,000
	2층	3	628,122,000	62,812,200	94,218,300	125,624,400	125,624,400	125,624,400	94,218,300	
	3층	10	635,022,000	63,502,200	95,253,300	127,004,400	127,004,400	127,004,400	95,253,300	
	4층	10	641,822,000	64,182,200	96,273,300	128,364,400	128,364,400	128,364,400	96,273,300	
	5-9층	50	648,722,000	64,872,200	97,308,300	129,744,400	129,744,400	129,744,400	97,308,300	
	10층이상	68	655,522,000	65,552,200	98,328,300	131,104,400	131,104,400	131,104,400	98,328,300	
059.7232C	1층	3	603,004,000	60,300,400	90,450,600	120,600,800	120,600,800	120,600,800	90,450,600	329,000,000
	2층	3	609,704,000	60,970,400	91,455,600	121,940,800	121,940,800	121,940,800	91,455,600	
	3층	4	616,404,000	61,640,400	92,460,600	123,280,800	123,280,800	123,280,800	92,460,600	
	4층	4	623,104,000	62,310,400	93,465,600	124,620,800	124,620,800	124,620,800	93,465,600	
	5-9층	20	629,704,000	62,970,400	94,455,600	125,940,800	125,940,800	125,940,800	94,455,600	
	10층이상	8	636,404,000	63,640,400	95,460,600	127,280,800	127,280,800	127,280,800	95,460,600	
059.9593D	1층	1	614,570,000	61,457,000	92,185,500	122,914,000	122,914,000	122,914,000	92,185,500	330,000,000
	2층	1	621,270,000	62,127,000	93,190,500	124,254,000	124,254,000	124,254,000	93,190,500	
	3층	1	628,070,000	62,807,000	94,210,500	125,614,000	125,614,000	125,614,000	94,210,500	
	4층	1	634,870,000	63,487,000	95,230,500	126,974,000	126,974,000	126,974,000	95,230,500	
	5-9층	5	641,670,000	64,167,000	96,250,500	128,334,000	128,334,000	128,334,000	96,250,500	

주택형	층별	세대수	마이너스옵션 공급 금액	1회차 지분취득(25%)		2회차 지분취득 (20%)	3회차 지분취득 (20%)	4회차 지분취득 (20%)	5회차 지분취득 (15%)	임대차계약 (공공지분 사용) 최초 임대보증금
				계약금(10%) 계약시	잔금(15%) 입주시					
	10층이상	3	648,470,000	64,847,000	97,270,500	129,694,000	129,694,000	129,694,000	97,270,500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		계약 시		입주 시	
59A	3,198,000		639,600		2,558,400	
59B	5,602,000		1,120,400		4,481,600	
59C	3,415,000		683,000		2,732,000	
59D	4,307,000		861,400		3,445,600	

※ 계약금 20% 중 일부 금액(백만원 위 미만)이 잔금에 포함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경우 준공 후 키포출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종료시점부터 세대 관리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정전, 누전, 누수, 우수법람 등 피해 발생 시 해당세대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과 골조 이외 항목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권양도가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은 자체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사업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공동주택 사업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해야 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 가능한 렌지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약시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보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을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조,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옥실벽체는 경량벽체로 건조의 보강작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립형 옥실장을 시공하지 않아 평탄한 벽체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으로 시공되지 않는 벽체에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이 설치되는 경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와 위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거실 및 침실 1 외방창호에 유리난간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6. 지분취득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대출 관련 유의사항

- 1회차 지분취득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그 날까지 납부하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장된 납부기한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연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제1회차 잔금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과 계좌에 따라 납부하며,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대금은 공동주택사업자가 각 회차 기준일 전까지 안내하는 예상액과 납부 전 확정액에 따라 납부합니다.
- 지분취득대금·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납부하기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7.5%(공고일 현재, 향후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연체료율로 일할 계산(연분 365일, 윤년 366일)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료율은 공급계약서·임대차계약서(공공지분 사용)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따라서만 변경되며, 변경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제1회차 잔금(관계 법령에 따라 수령이 유보되는 잔금 제외)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대금은 변경된 제1회차 기준일부터 5년마다 납부합니다(조기 입주를 이유로 일괄하여 앞당겨 납부하지 않습니다).
- 제2회차 이후의 지분취득대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미리 납부(선납)할 수 있으나, 선납금은 무이자 예수금으로 보관되어 해당 기준일에 충당되며 선납으로 지분을 조기에 취득하거나 할인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납금은 요청 시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령이 유보되는 잔금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 전에 납부하고, 유보된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납부하며, 제1회차 지분의 이전등기는 그 완납일에 신청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 공공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 교부일부터 부담합니다. 수분양자와 공동주택사업자는 소유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세금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는 회차별로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취득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취득시기와 신고·납부기한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한 전에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공유지분의 주택 수 산입 여부 등 세금 관련 사항은 관계 세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징수·적립하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수분양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로 부담합니다. 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월 다음 달 월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공제할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합니다.
- 대출 관련 유의 사항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최초 지분취득대금 및 회차별 지분 취득대금의 대출은 정부정책(규제지역 LTV제한 등)에 따라 일부 범위 내에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금액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사사항이 아니고 수분양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동기를 설정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세대는 지분취득대금 반환채권을 협약 금융기관에 양도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최소 유보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대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만 양도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대출 보증이 아니며, 대출 한도·금리 등은 협약 금융기관의 심사 및 담보조건에 따릅니다. 가동기는 공급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지분 재이전을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의 지분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기 설정·말소 비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 금리, 대출기간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금리 및 시장상황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출신청 시점의 대출 조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대출 비율 축소(금융권의 대출규제 등) 및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직접 회차별 지분취득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잔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0.30.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10.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물량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에게 공급(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물량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단,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단독세대원 제외)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3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30%	· 공고일 현재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 ('24.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10.30.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은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경기도→기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경기도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30.)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24.10.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 ('24.10.30. 전입한 경우 포함)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2년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은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경기도 2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가 지역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우선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공공주택사업자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청년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하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신생아우선공급 1순위자 포함)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입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입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입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입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총자산 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청년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부모 자산까지 해당 자산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청년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우리 공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총자산기준은 ①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및 ②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아래 "<표2> 총자산 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총자산 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①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건축물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ul style="list-style-type: none">「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자동차	차감한 금액이 362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 1,035백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일반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기준일의 액면가액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생)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임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세부내역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97,000천원 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431,000천원 이하	<표2> 총자산 보유기준 참고
② 자동차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 311,000천원 이하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 345,000천원 이하	
③ 기타자산	부모 1,035,000천원 이하	부모 1,035,000천원 이하	
④ 금융자산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희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년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 부부	우선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일반공급(6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일반 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1인(청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4,957,372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6,482,717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8,008,062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8,389,399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1인(청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기준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당첨자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출생, 입양, 임신 등)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1인’(청년이 속한 세대에 다른 세대구성원이 있어도 본인만 적용)
다자녀·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청년 특별공급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
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신생아 특별공급	-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단순 연락두절 불가)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정정·변경 등에 대한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국민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장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며, 남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하며, 남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16페이지 참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정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정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0명	0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 간 (4)	20	해당없음	0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수도권)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가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가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투기과열지구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무주택세대주인 분, 2)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3)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분양가능잔여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투기과열지구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무주택세대주인 분, 2)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3)입주자자격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가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후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후에도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일반공급 (6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15페이지 참고>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력에 해당되며 ①혼인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② 예비신혼부부 및 ③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혼인기간 관련**) 동일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경기도)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을 말함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력에 해당되며 ①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②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6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가.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나.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4페이지의 신청자격 검증대상표>의 신청자격별 검증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0점) 선택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 없음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경기도)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을 말함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입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점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4페이지의 신청자격 검증대상표>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p>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참조)</p>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p> <p>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p> <p>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p> <p>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p> <p>예시5 : 현재 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p> <p>예시6 : 현재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점.</p> <p>※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행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포함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세대원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의 예비배우자(혼인으로 구성할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둘 중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처족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신생아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신생아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사·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 사·도(경기도)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시는 특별사·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을 말함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가.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입주기간 이후 발급받은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급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인 분(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봄)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2>의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인 자에게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사·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 사·도(경기도)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시는 특별사·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을 말함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본인 월평균 소득 : 아래 소득기준표 참고

(단위 : 원)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점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아래 배점항목 고득점 순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배점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본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0% 초과 100% 이하	2	
	100% 초과	1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사·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해당 사·도(경기도)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시는 특별사·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을 말함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미거주	0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라. 소득세 납부기간	5년 이상	3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소득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 0점
	3년 이상 5년 미만	2	
	3년 미만	1	
	해당없음	0	

※ 본인의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청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분리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는 부모가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인 경우 부모가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사전에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시 부모님의 동일세대·분리세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경기도 수원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1순위 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분 1)무주택세대주인 분, 2)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3)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 1순위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순위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2>의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을 인정 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아래 “<표9>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아래 “<표10>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①무주택세대주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③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
2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표10>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 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존(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존(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9>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9>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주택타입)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0>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세부 주택형(주택타입)별로 수원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 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 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표9>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보주택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신생아 경우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건보주택(☎031-261-1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급절차 교란자 또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2. 거주 의무, 전매 제한 안내

■ 거주 의무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6항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의 거주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입주 준비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은 확인 없이 거주한 것으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해외체류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에 한하여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의 명칭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호의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지역이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 의무기간 중 위 사유 없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14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참조. 이 경우 공급계약의 해제·위약금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매입가격(납부한 입주금과 그 이자)의 정산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자 임대 전매 제한

- 수분양자는 거주 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계속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의무기간 종료 후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전 동의(유효기간2년)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 갱신 시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 전에 임차인에게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 보유 사실 등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정 거주 의무 예외요건 미충족, 지분취득대금의 3개월 이상 연체, 보증금 초과, 보증·담보 미확보, 주거 외 사용 등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거부합니다. 제3자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전매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시정요구·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매제한

- 공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1.18.)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사유(세대원 전원의 타 지역 이전, 해외 이주, 이혼에 따른 배우자 이전 등)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소유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소유 지분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전매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가 부담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매 시 매매가격과 법정 취득가격(전매 직전 지분 취득 시의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은 전매 시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전매동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보완·감정평가 기간 제외)에 동의 여부를 통지하며, 매매예정가격이 실거래가·KB시세로 산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감정평가로 보완합니다. 주택 전체를 매수하는 자는 중전 수분양자의 잔여 지분취득의무와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전매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필로티가 있는 라인은 최하층이 없는 것으로 간주),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4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가능(청약홈, LH 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 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본인 기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본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본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를 제외한 예비배우자(혼인으로 구성할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천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천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천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0>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6. 대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위약금은 ① 최초 지분취득 전 계약금·제1회차 잔금 미납 : 주택공급가격의 10%(기납부금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 ② 최초 지분취득 후 지분취득대금 미납·중대한 사용의무 위반 : 주택공급가격의 10%와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납부한 지분취득대금의 20% 중 적은 금액, ③ 동의 없는 전매 : 주택공급가격의 10%이며, 임대차계약(공공지분 사용)에서 별도의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합의해제)에도 위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법정 매입과 부정청약 등에 따른 계약취소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정산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청년 특별공급	'26.11.09.(월) 09:00 ~ 17:30	• (PC · 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건분주택 (10:00 ~ 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 1순위	'26.11.10.(화) 09:00 ~ 17:30		
	• 2순위	'26.11.11.(수) 09:00 ~ 17:30		
일반 공급				

- ※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1순위·2순위 기준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	----------

1순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①무주택세대주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③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가능합니다.
2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접속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①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접수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등으로 동·호배지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태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태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①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하고, ②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 등에 따른 검색 결과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공주택사업자는 자격확인 제출 서류 외에도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급유형(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합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형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공공주택사업자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8.(수) ~ 2026.11.2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11.1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안내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상기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는 참고사항이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상황에 따라 은행 지정별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일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서류 제출 (정당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정당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6.11.18.(수) 청약Home 및 모바일앱 (www.applyhome.co.kr)	2026.11.20.(금)~2026.11.25.(수) / 6일간 (10:00~17:00)	2027.01.25.(월)~2027.01.27.(수) / 3일간(10:00~17:00)	추후 일정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 고지 (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건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98번지 일원) ※ 사전방문 예약제 운영 -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서류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을 완료한 당첨자에 한함)는 당첨 동·호수의 취득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정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당첨자(예비당첨자의 경우 해당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추정 및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정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차차로 안내함에 따라 연차차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본인의 연차차(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정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기간 상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건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일원)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 청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 공공주택사업자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광교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본인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산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 또는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출산특례 적용 대상자 포함)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급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조희기안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자녀	• [출산특례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배우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신청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인터넷 청약신청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세대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자는 1961.1.1.로 지정)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일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 접수장소에 비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예비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청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소속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1> 참고)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속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1>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청자의 직계존속(당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청자 또는 당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속산정 시 당청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청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신생아 특별공급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청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청년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또는 모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혼인여부 확인
	○		소속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 <표11> 참고)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표11>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 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신생아 우선공급]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초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자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것을 말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금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함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사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부동산 공급계약 관련 전자수입인지 구매 -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양식 게시 참조
	○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재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분양사무실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공공주택사업자(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계약자가 공동 분할 납부하며, 분양 계약체결 후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분양자가 먼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한 뒤 공공주택사업자(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인지세 분담액(인지세의 1/2)을 수분양자의 아파트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부동산 등기(최소 수분양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절차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인지세 환불 및 인지세 분담액(인지세의 1/2)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제반사항(선택-계약-설치 등)은 민간사업자(동부건설주) 외 4개사) 책임으로 진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및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의해 형태, 재질, 사양, 색상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건본주택 또는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며, 건본주택에 실제 적용된 마감재 및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제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해당세대가 대청세대인 경우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 계약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변경)이 불가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벽체, 거실 및 복도의 벽체, 마루 등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현관 중문	59A	선택1. 수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수동 중문 + 시트 패널 (중문 좌우 벽체)	370,000	1,480,000	1,850,000
		선택2. 자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리니어 모터형) + 시트 패널(중문 좌우 벽체)	616,000	2,464,000	3,080,000
	59B	선택1. 수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수동 중문 + 시트 패널 (중문 좌우 벽체)	364,000	1,456,000	1,820,000
		선택2. 자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리니어 모터형) + 시트 패널(중문 좌우 벽체)	608,000	2,432,000	3,040,000
	59C	선택1. 수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수동 중문 + 시트 패널 (중문 좌우 벽체)	456,000	1,824,000	2,280,000
		선택2. 자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리니어 모터형) + 시트 패널(중문 좌우 벽체)	700,000	2,800,000	3,500,000
	59D	선택1. 수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수동 중문 + 시트 패널 (중문 좌우 벽체)	320,000	1,280,000	1,600,000
		선택2. 자동 중문	현관 1도어 슬라이딩 자동 중문(리니어 모터형) + 시트 패널(중문 좌우 벽체)	568,000	2,272,000	2,840,000

※ 현관 중문의 하부 레일은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되며, 바닥 마감재보다 돌출됩니다. 상부 레일은 돌출되어 노출형으로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강화유리(5T)에는 비산방지필름이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각 차단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미선택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의 형태, 보강 방식, 상세 치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자동 중문 선택 시 센서 노출형으로 시공되오니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방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시그니처 키친	59A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 벽체 및 상판 + 상부 전동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 무광 수전 + 절수페달	2,234,000	8,936,000	11,170,000
	59B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 벽체 및 상판 + 상부 전동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 무광 수전 + 절수페달	2,228,000	8,912,000	11,140,000
	59C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 벽체 및 상판 + 상부 전동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 무광 수전 + 절수페달	1,904,000	7,616,000	9,520,000
	59D	이탈리아 CAESAR 세라믹 벽체 및 상판 + 상부 전동 플랩장(히든 후드, 센서 조명) + 무광 수전 + 절수페달	2,306,000	9,224,000	11,530,000

※ 세라믹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은 랜덤 패턴으로 시공되며, 컷팅 위치에 따라 밝기 및 패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마감재의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패턴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유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를 제외한 기타 빌트인 가전제품은 본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는 별도 추가 선택품목입니다.

※ 옵션 선택 시 상부장 하부 센서조명은 후드 및 일부구간 제외됩니다.

※ 일부 타입은 옵션 선택 시 상부 전동 플랩장+일부 여닫이장이 설치됩니다.

(3) 주방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주방 빌트인	모든 주택형	인덕션 업그레이드	선택1.	3구 인덕션 (삼성전자 NZ63B5056AK)	176,000	704,000	880,000
			선택2.	3구 인덕션 (LG전자 BEI3ASB4BIE)	198,000	792,000	990,000
		빌트인 전기오븐	선택1.	빌트인 전기오븐 (삼성전자 NQ36A6555CK)	96,000	384,000	480,000
			선택2.	빌트인 전기오븐 (LG전자 MZ385EBT1)	96,000	384,000	48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선택1.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80H71Y1B0S)	232,000	928,000	1,160,000
			선택2.	빌트인 식기세척기 (LG전자 DIE5PT)	246,000	984,000	1,230,000

※ 옵션으로 설치되는 빌트인 가전의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센트리C-HOME'에서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 브랜드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 제품 선택 시 조작부 노출없이 풀빌트인으로 설치되며, LG 제품 선택 시 조작부 노출되는 가구도어 설치형으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의 경우 본공사 투입 시점에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타입 및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유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적용되는 가전 및 공간은 마감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차단기는 인덕션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와 가스 차단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설치되며, 인덕션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이 노출로 설치되고 가스 차단기 후단에서 캡마감 처리될 예정입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선택여부에 따라 세대단자함의 차단기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옵션 선택시 상부 전동 플랩장 + 일부 여닫이장이 설치됩니다.

(4) 키친핏 냉장고 세트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키친핏 냉장고	모든 주택형	선택1. 삼성 비스포크	냉동전용고 + 냉장전용고 + 김치전용고 세트(삼성전자 / 칼라 : 코타화이트)		1,142,000	4,568,000	5,710,000
		선택2. LG 오브제	냉동전용고 + 냉장전용고 + 김치전용고 세트(LG전자 / 칼라 : 미스티베이지)		1,178,000	4,712,000	5,890,000

※ 옵션으로 설치되는 냉장고 세트의 홈IoT 가전제어 기능은 '센트리C-HOME'에서 연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조사 브랜드의 홈Io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키친핏 냉장고는 세미 빌트인 제품으로, 가구와 제품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 평면의 대칭 여부와 관계없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냉동(우열림), 냉장(좌열림), 김치(좌열림) 냉장고로 시공됩니다.
 ※ 냉장고의 경우, 에너지 효율 계산방식 변경 등 법률 개정 및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본공사 시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의 설치유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평면선택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평면선택형 (무상선택형)	59B	선택1. 와이드 침실형	침실3, 알파룸 통합(무상선택형)		-	-	-
평면선택형 (유상선택형)		선택2. 수납 강화형	침실3 공간 확대, 침실3 전용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침실3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가구도어 및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포함)		468,000	1,872,000	2,340,000

※ 옵션 미선택 시, 개별 침실형(침실3, 알파룸 별도의 실로 구성)으로 시공됩니다.
 ※ 59B 와이드 침실형은 무상 선택이 가능하며, 수납 강화형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평면 선택형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조명, 배선기구, 유상옵션 에어컨의 용량 또는 위치, 커튼박스 길이 등이 변경되오니,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59A, 59C, 59D	I 공용공간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실링팬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2면 간접조명 + 욕실장 하부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890,000	3,560,000	4,450,000
		II 침실	침실 직간접 직부등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234,000	936,000	1,170,000
	59B	I 공용공간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일체조명 + 거실 실링팬 + 거실 아트월/커튼박스 간접조명 + 복도 아트월 간접조명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2면 간접조명 + 욕실장 하부조명 + 현관 신발장 하부조명 추가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894,000	3,576,000	4,470,000
		II 침실	기본	침실 직간접 일체조명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314,000	1,256,000	1,570,000
			선택1.(와이드침실형)	침실 직간접 일체조명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180,000	720,000	900,000
			선택2.(수납강화형)	침실 직간접 일체조명 + 네트워크 스위치 업그레이드	188,000	752,000	940,000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네트워크 스위치가 고급형으로 변경되며, 네트워크 스위치의 회로수, 크기, 재질, UI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디자인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직간접 조명의 SMPs함(안정기)이 냉장고장 상부에 설치되어 해당 부분의 수납이 제한되오니 견본주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타입 및 평면 선택형에 따라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VR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조명 사양(디자인, 사이즈, 조명 방식 등) 및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형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파우더 및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시그니처 스타일룸	59A	파우더 특화(조명형 거울 + 후면 세라믹 벽체 마감) + 드레스룸 특화(벽판넬 시스템 선반 + 2구 멀티조명)	472,000	1,888,000	2,360,000
	59B		604,000	2,416,000	3,020,000
	59C		514,000	2,056,000	2,570,000
	59D		476,000	1,904,000	2,380,000

※ 선택형에 따라 파우더 공간의 배선기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시스템선반은 풀대형으로 설치되므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모든 주택형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상인 SSD100)	190,000	760,000	950,000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는 세대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옵션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 옵션 선택 시, 조명 및 스프링클러, 기타 설비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는 홈IoT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9)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타입)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전장형 시스템 에어컨 (IoT 연동형)	59A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744,000	2,976,000	3,72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1,110,000	4,440,000	5,55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848,000	3,392,000	4,24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02,000	5,208,000	6,510,000	
	59B	개별 침실형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744,000	2,976,000	3,72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1,110,000	4,440,000	5,550,000
			공기청정형	선택3.	5대 (거실, 침실1,2,3, 알파룸)	1,532,000	6,128,000	7,660,000
				선택1.	2대 (거실, 침실1)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848,000	3,392,000	4,240,000
		공기청정형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02,000	5,208,000	6,510,000	
			선택3.	5대 (거실, 침실1,2,3, 알파룸)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770,000	7,080,000	8,850,000	
		선택1. (와이드 침실형)	일반형	선택1.	4대 (거실, 침실1,2,3)	1,114,000	4,456,000	5,57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10,000	5,240,000	6,550,000
		선택2. (수납강 화형)	일반형	선택1.	4대 (거실, 침실1,2,3)	1,112,000	4,448,000	5,560,000
				공기청정형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08,000	5,232,000
	59C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744,000	2,976,000	3,72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1,110,000	4,440,000	5,55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848,000	3,392,000	4,24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02,000	5,208,000	6,510,000	
	59D	일반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744,000	2,976,000	3,72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1,110,000	4,440,000	5,550,000	
		공기청정형	선택1.	2대 (거실, 침실1)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848,000	3,392,000	4,24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2,3) + 공기청정형 기능 추가	1,302,000	5,208,000	6,510,000	

※ 전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이며, 난방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니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는 삼성 또는 LG제품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시 각 세대 실외기실에는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10) 욕실 복합 다기능 팬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주택형	설치 위치 (설치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20%)	잔금(80%)	합계
욕실 복합 다기능 팬	모든 주택형	공용욕실, 부부욕실 환풍기 제품 업그레이드(함펠 FHD2-C150P_NOVA)	162,000	648,000	810,000

※ 욕실 복합 다기능 팬의 ON/OFF는 벽부형 스위치로 작동되고, 세부 기능은 무선리모컨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 팬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 팬 사용자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 팬 옵션 선택 시, 조명 위치 및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 팬은 세대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여부에 따라 세대단차함의 차단기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다기능 팬은 홈IoT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주택형별 별도계약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취득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	동부건설(주)

※ 상기 계좌와 공동주택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4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7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7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인지세 안내

※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전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시공사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공동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수입인지 세액 기준(계약자 부담액은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건본주택 및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공공주택사업자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점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계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공공주택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를 적용받는 경우 등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공공주택사업자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예정 시기 · 부대복리시설 관련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 : 2029년 10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제1회차 잔금은 실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대금은 변경된 제1회차 기준일부터 5년마다 납부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오염도,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코자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 열쇠 교부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려는 계약자는 입주하려는 날 전일까지 제1회차 지분취득대금(연체료 포함), 최초 임대보증금, 발코니 확장비·추가선택품목 대금 및 관리비에지금을 납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서류(협약 금융기금 대출 이용 시 가동·제관연도 관련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관리비에지금 납부영수증 등을)을 제출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회차 잔금은 제1회차 지분취득 기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입주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수령이 유보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납부).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더라도 제2회차 이후 지분취득대금을 일괄하여 앞당겨 납부하지 않으며, 변경된 제1회차 기준일부터 5년마다 납부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에지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아너스 라운지), 작은도서관(센트레 라이브러리),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맘스라운지, 피트니스센터(센트렐 듀플렉스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 골프 라운지), 게스트하우스(센트렐 스테이), 관리사무소, 경비실, 개별창고, 어린이놀이터(피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 등

5.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에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관	마루갑을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단차 없애기,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 조정, 세면기 높이 조정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	----	----------	-------

· 신청시기 : 최초 공급계약 체결기간(2027.01.25. ~ 2027.01.27.)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

6. 지구 및 단지 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분양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수분양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단지 대지경계선 외의 영역은 본 단지외 무관하며 해당 영역의 완충녹지, 우수처리시설 등 변경에 따른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당선 이후 인허가 및 심의 절차와,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공모단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협의,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계약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동호수가 추첨 배정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전의 분양 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세대 거실 및 침실1 외부창호에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도중 파손이 있을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 및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주변 인접 건물,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반경 500m 이내 인덕원·동탄 북산철이 공사 중이며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및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생활환경 및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의 공원 및 공공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공원 이용객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대지경계선 외 동측 사색공원 사면부위 마감시공을 위한 석축(혹은 그에 준하는 흙막이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처리시설을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 대 조망 및 일조권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의 공원과 단지의 인접한 부분은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단지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동선은 현재 미계획되어 있습니다. 추후 공원계획에 따라 진입동선이 신설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으며, 신설될 경우 외부 이용객의 활동으로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서측 및 남측에 접한 완충녹지(사업구역 외 부지)는 향후 조성될 계획에 있으며,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 위치, 구간, 시설물 사양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야 하므로 홍보물 상의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의 조성완료 시기는 입주시점과 다를 수 있으며, 완성 후 유지관리 및 개방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릅니다.
-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소화차통학과 부지와의 단차 부위에는 기존의 자연석쌓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위치는 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현재 소화차와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단지 간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경계석, 계단, 마운딩(구름)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의 노선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이에 따라 노선, 버스 정류장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당 사업지와 관련한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 배치계획

- 배치 계획의 결과에 따라 본 단지 서측 대지경계선 내 방음벽이 설치되며, 해당 방음벽은 공동주택의 교통소음저감을 위해 계획된 시설로 이에 따른 유지보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소 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상시개방 및 입주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고시한 보행통로이며, 단지 출입구 및 보행통로입구 등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며 예정이고 보행도로 중간에 설치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 역시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입주주민이 임의로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어린이놀이터(편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야간 조명 계획 등에 따라 입주 후 일조권 및 조망 권, 사생활권,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레벨, 단지 주부출입구, 주동출입구, 보행자출입구 등은 분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구조승인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조정시설물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동 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 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정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구조 특성상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및 CCTV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안전 등의 사항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단지 내 6개소로 아파트용 5개소(1701동 북동측 1개소, 1703동 북동측 1개소, 1704동 동측 1개소, 1706동 동측 1개소, 1708동 남동측 1개소), 근린생활시설 전용 1개소(근린생활시설 남동측 1개소)가 있고,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구역,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02~3동 블루아트갤러리, 1701동 및 1709동 주출입구, 1708동 센트레커넥트파크에는 티하우스, 미러폰드, 벽천, 석가산 폭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 비상차로 등 소방관련현지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선형 및 폭은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기안전메트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지역은 수목 식재가 불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예상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티하우스(미러폰드) 주변 석가산 주변 어린이놀이터(편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 주변에는 에어키이 설치되며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머지 옥외 파고라(조정시설물)에는 에어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706~1708동 주변으로 어린이놀이터(편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놀이터는 안전인증을 득한 후 입주민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터(편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석가산 폭포, 벽천, 미러폰드 등 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용수비, 전기료, 소독비, 안전요원(필요시)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에 따라 수경시설 가

동시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소음, 야간 조명, 사생활침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경시설은 경관형 시설로 입수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임의로 입수(축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안전 사고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차입구 인근 및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에 소방차 부사공간 및 공기안전메이트가 구축되며, 단지 특화를 위해 비상차로 일부 구간이 친환경 포장재로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및 보행로 등에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인해 진출입시 소음과 보행자 출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분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옥외 승강기 3대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각 동별 출입구의 진입방법(필로티, 무단차, 경사로, 계단 등)은 상이하며 계약 전 모형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편함은 지상 1층에 설치되고, 무인택배함은 지하 1층에 설치 및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보행도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함 이용선이나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도서에 표면에 있는 통기관, 환기설비 등 단지 내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치는 가능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 인입을 위해 단지 내 전기시설물(전주 또는 패드)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주차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며 분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도로선형, 위치,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계획

- 본 단지의 BI계획,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시설(사설물 및 포장)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협의 및 심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1층 필로티 공간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에 의한 요철 및 외관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으로 인해 주동 입면에 이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701동, 1703동, 1706동, 1708동 옥상층, 1703동, 1706동, 1708동 지하1층 동통신실)
- 주출입구 문주, 일부 주동 조명 계획으로 인접 세대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명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피터설비, TV 안테나, 경관조명, 태양광, 옥탑구조물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해 눈부심, 소음, 분진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및 옥탑 드레인, 옥탑 사다리 등의 위치는 분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방 난간대의 길이, 형태, 색상, 디자인 등은 구조계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공용홀 및 계단실의 창호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며, 자동개폐창의 위치는 동별 적용 층수가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외벽(실외기실, 그릴창)에 환기 장치로 인한 급배기구가 타공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은 전 주동 옥상에 설치되며, 분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색상, 패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규제 및 입주인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합니다.
-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견본주택 내의 모형, 도면, 카탈로그를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주동을 제외하고 동별 필로티가 설치되며, 동별 출입은 필로티를 통해 가능합니다. 1706동 1~2호, 1707동 1~2호의 경우 별도 주동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며,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공용홀, 필로티 평면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창호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층별 코어의 계단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공사 시 주동 출입구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저층부 외벽은 석재마감, 지상 1층 동출입구 주변은 고내식 강판 마감이며, 필로티 내부는 석재 및 뿔살로 시공되오니, 계약 전 상담을 통한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자동개폐창치가 적용된 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마는 조명형으로 설치되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빛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사인계획(간판 등)으로 인해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관리비 부과 및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계획으로 시공되며 분공사 시 익스테리어/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 협의를 통해 본공사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색상 및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인접세대(수직, 수평)에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1701동 지하 1층에 실내 골프 연습장(스프린 골프 라운지), 피트니스센터(센트럴 듀플렉스 피트니스, 작은도서관(센트레 라이브러리),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8관(스라운지, 모두의 사무실, 용역원 휴게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702동 지하 1층에 게스트하우스(센트럴 스테이), 1703동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부 지상 1층에 경로당(아너스 라운지),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주변에는 경비실이며, 1709동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에서는 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시설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가동 및 진동,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분공사 시 공사여건으로 인해 천정과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단지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내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구 부근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주는 부대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형태, 디자인, 마감재, 구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단지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동통신실, AV 등의 위치, 면적 등은 분공사 시 장비 배치, 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 사이즈의 크기, 위치, 자체, 색상, 개구율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재공정기는 실제 사용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집기 및 마감재는 설치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01동과 1702동 사이 외부에 피트니스센터(센트럴 듀플렉스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스프린 골프 라운지) 실외기는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 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실외기는 개별 실외기실로 구축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및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예약 시스템은 3년간 무상제공 후 유상으로 전환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해당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 예약 시스템의 범위와 조건 등은 기본 세팅되며, 추가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시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주차대수(1.5대/세대)는 전체 세대수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며,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 1층에는 지하 2층과 연결된 차량 경사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를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통행로 유효 높이는 지하 2층 2.3m, 지하 1층 2.7m로 계획되어 있고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 1층에는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가 설치되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는 급속 9대, 완속 36대, 완속이동형 45대 충전설비가 설치되며, 전기차 충전시설 수량과 위치는 변동될 수 있고, 사용요금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 협의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급속충전기는 완속충전기는 2채널로 설치될 수 있고, 2채널은 2대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과금형 충전 콘센트는 일반 주차구역으로 지정되며, 일반차량과 전기차량이 같이 주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전 구역에는 주차유도 카메라(시 열화상 기능 포함) CCTV가 설치되며, CCTV의 위치와 수량 및 사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까지의 접근 및 이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일반, 확장, 장애인 주차, 교통약자 우선, 전기차 주차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형 주차구획은 상용개조으로 법정 대비 2.6x5.0m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막다른 통로 공간에 화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및 구조, 기동, 소화시설 등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 구간(기게실, 저수조, 우수조, 우수조 관리층, DA, PIT)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무기질계 뽕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높이는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 후 각 주동 공용홀 이동거리 편차,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우수조, 펌프실, 개별창고, 동통신실, 제연팬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지상 환기구(D/A)는 일부 저층세대의 조광권을 침해할 수 있고 기

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겨울철, 여름철 및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 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랜치 시공 시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입주인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주출입구 부근에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 4면이 설치되며, 주차유도선을 바닥에 표기하여 입주인 주차구역과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에는 동별로 개별보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냄새, 소음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공간계획 및 인테리어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차(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살비 배관 전기 배관 및 트라이 살지 등에 따라 부속실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시공 시 용량 계산에 따라 관경 루트 자체사양 재질 디자인 부속철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전층 동출입구에는 제습기 및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전층, 지상 1층 동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될 예정이며, 바람으로 인해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 저수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차관제용 차단기의 위치와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RC+PC 복합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RC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평면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세대 내 개별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침실,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의 접합부 처리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해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신실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 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육,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주기적인 실내 환기로 결로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실외기실, 욕실 바닥은 본공사 시 구배시공,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 위치 변경 등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이라도 하더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될 수 있으나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1층 및 기준층 층고는 3M(최상층 제외), 천정고는 2.4M이며 본공사 시 세대 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1 외부창호는 확장 시 유리난간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1 외부창호의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맞담 창쪽은 개폐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 외부창호는 PL 여닫이 단창이며, 개폐 손잡이 위치, 열림 방향 및 각도는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알루미늄 그릴창 개폐 손잡이(레버) 위치는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침실1 발코니 외측창은 PL 슬라이딩 단창으로 시공됩니다.
- 본공사 시 주방 창호와 분리된 별도 철재투시형 난간은 창호 프레임과 창턱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 난간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형: 59A, 59B, 59C)
- 승강기와 현관문이 서로 마주 볼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전 반드시 평면 배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세대는 세대 벽과 전열실 발코니실 기둥 등 수직으로 근접하여 살지되며 장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에 해당하지 않으니 입주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벽체를 제외한 단지 내 세대의 비내력벽체는 경량철골벽체(Dry wall)로 되어있으며, 못, 앵커 등의 고정기 불가하고 피스 등을 사용한 고정필요 시 스티트 파인더를 구매하시어 스티트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안내책자에 배포되는 거실의 벽걸이 TV 보강 위치 및 고정으로 인한 하자 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세대 내 건식벽체는 비내력 콘크리트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대피공간 내 하향식 파난구의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바닥에는 하향식 파난구가 미설치되며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파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동별 필로티 및 부대설비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와 2층 또는 1층인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세대(1층 및 필로티) 하부에는 층간 완충재가 미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전실구간에는 해당법령에 따라 세대 현관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복도 등 공용부 및 세대 전용 공간 천장 내부의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와 상부층(상층 세대) 설비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59B 타입의 침실2에 꾸러민 서재 공간은 연출용 시공부분으로 본공사 시에는 직부 조명, 벽지 마감등 기본 침실로 시공 됩니다.
- 59A, 59D타입은 다용도실에 창문이 없으므로 환기설비장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다른 타입과 상이하게 천장마감이 시공되며 가스설비, 배관 및 계랑기는 침실1 발코니에 노출 시공됩니다.
- 59B, 59C타입은 다용도실에 외부창호가 설치되고 별도 천장마감 없이 배수 및 가스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일반 세대 내 환기 및 조광 개선을 위해 틸트&턴 창호가 설치됩니다. (설치 위치: 59D침실1)

▶ 가구 및 마감재

- 건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A, 59C, 59D, 84A, 84C 타입은 건본주택 건립세대 중 59B, 84B타입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되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 및 천장 사이에 가스배관, 덕트 및 각종 설비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림막 등이 설치되고 설치시 일부 틈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우수분배기 및 관련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의 인입 위치 및 경로에 따라 다용도실 창호 또는 주방가구의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의 싱크대의 배수구 및 수전의 위치는 설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건립세대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신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 품목(설치사향, 규격 등),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신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신품목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카탈로그,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 품목 개소 감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냉동, 김치냉장고, 후드, 전기오븐, 쿠포, 식기세척기 등)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는 Mock-up 세대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욕실 겨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 있더라도, 자체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임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디자인 가구재의 두께 차이로 인해 도면상 안목치수와 실측치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내부 및 단위세대 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발코니, 욕실(사위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지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하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관중문 슬라이딩도어(유상옵션선택 시)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스템가구, 욕실장, 샤워부스의 형태, 재질, 색상, 규격, 하드웨어, 시공디테일,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시공부분 색상 메치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본주택과 타일패턴 및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폭, 높이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시공 및 설치되는 모든 자재(색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표면에 크랙처럼 보이는 GRAIN은 자재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와는 무관하며 자재자체의 품질상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인조대리석류(주방상판, 화장실상판, 욕실상판, 현관디딤판 등) 및 세라믹타일류(주방상판 등)는 자재의 특성상 무늬와 색상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 되는 관계로 본공사 시 연결부위가 발생(타일별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준공채용 시공되지 않으며, 갈래반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규격,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상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 등에 따라 도배 조인면적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에 따라 원하시는 가전 제품의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위스타워 등) 설치 시 창호 개폐에 간섭, 가전 사양에 의해 가스배관 이동필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및 법적 문제는 시공하지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자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품목은 공간을 반드시 사전에 실측 확인 후 구입 설치 하셔야 하며 하차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감자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쿠팡 주위의 가구의 경우, 사용하는 후라이팬, 냄비 크기에 따라 그늘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평면도에 따라 냉장고 하부에 난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는 발코니화장실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크기나 마감자재, 레이아웃 및 제품품목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공사 시 내부일반가구(현관 신발장, 불박이장 등의 수납장),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의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약세서리, 빌트인 제품(쿠팡, 후드 등) 등은 평형에 따라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상이하며, 분공사 시 제품 사양 및 제조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티프팅소기 및 물결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색상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배 배수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받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과 마루금들은 제품 특성상 이용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뭇 부위가 분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현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분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창 중 유리난간이 설치된 창 부분만 개폐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창고 및 팬트리에 설치되는 선반은 개구부 확보를 위해 가구문들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현관 창고 도어는 신발 높이와 상관이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상부 플랩장은 냉장고 설치시 틈새가 좁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및 기계 설비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나 배관구배에 의한 단차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 및 기타 소방시설은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실제 시공되며 견본주택과 위치 및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주방,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위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유니트 및 덕트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위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실내 음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급기 및 환기가 필요합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분공사 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위생기구, 수전, 액세서리, 샤워부스, 욕조 및 점검구 등의 위치와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의 바닥 배수구, 선풍통, 수전, 온도조절기 및 각종 설비기기의 위치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가구 하부와 욕실의 욕조 하부, 샤워부스 하부, 위생기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등박스 설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캡을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 환기구 시스템 및 화장실 직배기 시스템 설치로 건물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기상 악화에 따른 소음이 단위세대 내에 전달될 수 있으며, 배기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 및 강풍 등 이상 강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 시스템은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측정의 방법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는 소모품으로 사용자의 이용패턴 등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기설비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 분공사 시 적용될 세대 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저,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 조명등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공사 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월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커버는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전 세대 거실과, 최저 2개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의 각 실(주방 창고 등 작은창 제외)에는 방범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센트레빌 전용) 홍보 내 표현한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및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의 무상제공기간은 입주 후 3년이며, 3년 이후 사용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아서비스는 바이버와 호환되는 홈IoT 전용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센트리 C-HOME 내 가전 제아서비스는 연동링크를 통해 홈IoT 전용 가전기기 제조사의 홈IoT 앱에 연결되어 제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센트리 C-HOM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통신사 무관)
- 센트리 C-HOME 내 커뮤니티 예약 서비스는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업그레이드(유상옵션)로 인한 조도는 기본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네트워크 스위치, 콘센트류, 스위치류 월패드 등은 분공사 시 색상, 재질, UI, 크기, 세부기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문이 없는 다용도실이 적용된 타입의 세대는 배기설비 설치로 인해 천정이 생겨 층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편그라운드, 그로잉그라운드),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단지 내 석축, 옹벽, 서측 영구방음벽, 공공완충녹지, 동측 공공 사색공원벽 석축, 식재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입주를 위하여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커뮤니티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안송,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는 견본주택 내 POP로 표현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매치, 도장 줄눈, 색상, 난간대, 캐노피, 필로티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내외부 현황, 도시계획(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에는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DA 등 설비 시설물의 규모는 기계설비 작동을 위해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사양, 업체, 규격, 시공상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평면, 세대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7. 마감자재 목록표

-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홈페이지(<http://www.gwanggyo-centreville.com>)에 게시합니다.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illegible]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 기관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9.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1층(데크층): 유효높이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2층: 유효높이 2.3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주출입구, 부출입구: 유효높이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내부 램프: 지하1층 유효높이 2.7m 이상, 지하2층 유효높이 2.3m 이상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추후라도 이는 분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구분			적용총액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1)		238,738,716	공사비(51)	건축(23)	용접공사(23)	-	기계(9)	난방설비공사(45)	1,058,599	
	기간이자(2)		13,585,860			조적공사(24)	2,939,996		가스설비공사(46)	635,160	
	필요적 경비(3)		-			미장공사(25)	3,172,793		자동제어설비공사(47)	211,720	
	그 밖의 비용(4)		782,086			단열공사(26)	2,853,636		특수설비공사(48)	5,081,276	
공사비(51)	토목(13)	토공사(5)	6,540,347			방수·방습공사(27)	2,065,132		그밖의 공종(4)	공조설비공사(49)	-
		흙막이공사(6)	1,301,842			목공사(28)	1,126,435			전기설비공사(50)	9,526,680
		비탈면보호공사(7)	-			가구공사(29)	3,567,045			정보통신공사(51)	3,617,336
		옹벽공사(8)	178,135			금속공사(30)	2,252,871			소방설비공사(52)	7,488,811
		석축공사(9)	-			지붕 및 흙통공사(31)	187,739			승강기공사(53)	1,795,605
		우수·오수공사(10)	1,016,866			창호공사(32)	4,693,481			일반관리비(54)	7,957,646
		공동구공사(11)	-			유리공사(33)	1,689,653			이윤(55)	7,321,03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12)	418,499			타일공사(34)	3,567,045			간접비(6)	설계비(56)
		도로포장공사(13)	660,508		돌공사(35)	3,473,176	감리비(57)	7,773,104			
		교통안전시설물공사(14)	472,653		도장공사(36)	1,971,262	일반분양시설경비(58)	5,843,824			
		정화조시설공사(15)	-		도배공사(37)	1,595,783	분담금 및 부담금(59)	1,859,399			
		조경공사(16)	3,786,252		수장공사(38)	4,975,090	보상비(60)	-			
	부대시설공사(17)	2,485,998	주방용구공사(39)		1,408,044	그밖의 사업비(61)	3,723,421				
	건축(23)	공통가설공사(18)	7,697,308		그 밖의 건축공사(40)	2,816,088	그 밖의 비용(62)		49,325,631		
		가시설물공사(19)	938,696		급수설비공사(41)	1,482,039	합계	499,074,100			
		지정 및 기초공사(20)	1,877,392		급탕설비공사(42)	2,117,198					
		철골공사(21)	-		오수·배수설비공사(43)	3,599,237					
		철근콘크리트공사(22)	49,750,896		위생기구설비공사(44)	1,058,599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 법인명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	238,738,716

11.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기간이자	기타비용	소계	주택 품질향상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공동주택 성능등급	입면마감 특화	조경특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홈네트워크	초고속특등급	냉매배관	기계 환기
13,585,860	782,086	14,367,946	4,278,437	713,072	862,714	2,121,273	4,089,343	5,503,638	-	1,650,004	2,498,066

건축비 가산비									
친환경 주택건설	지하주차장 충고증가	인증설계비 추가비용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가비용	지반관련공사			안전관리비	기타법령 조례변경	소계
				흙막이 및 차수벽	말뚝박기	암석지반		전기차 충전시설	
3,389,193	416,929	316,209	8,778,922	2,841,748	-	11,322,025	296,417	247,632	49,325,631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12.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설사업관리(건설, 통신, 소방)	전기 감리
상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천도엔지니어링
금액	10,469,564,000원	795,635,800원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13.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공공시행사)	공동 사업주체(민간사업자 겸 시공사)				
상 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부건설(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	대보건설(주)	(주)우호건설	씨앤씨종합건설(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동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갈월동)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5번길 5-1, 근생동 2층 203호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40(아동동)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나길9. 203호(갈현동, DX타워)
법인등록번호	130171-0000052	110111-0005002	180111-0602507	164511-0002874	115611-0021912	135311-0004275

※ 본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분양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 공공주택사업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p>견본주택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p>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운영시간	10:00 ~ 17:00 ※ 16:30 입장 마감
	분양문의	031-261-1770 (광고 자연엔 센트레빌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www.gwanggyo-centreville.com